

유럽연합 비관세장벽 이슈

European Union Non Tariff Barriers Issue

유럽연합 환경위원회, 포장 및 포장재 폐기물 규정 채택



2030년부터 재사용, 재활용 가능한 포장재만 판매 및 사용 가능하도록 규제 강화

2023년 10월 24일, 유럽의회의 환경위원회(ENVI)는 포장재의 재사용 및 재활용을 촉진하며 불필요한 포장재와 포장재 폐기물을 줄이기 위해 제안한 「포장 및 포장재 폐기물 규정([Regulation on Packaging and Packaging Waste, Amending Regulation \(EU\) 2019/1020 and Directive \(EU\) 2019/904, and Repealing Directive 94/62/EC2](#))」에 대한 입장문을 최종 채택함

1. **배경** : EU에서는 시민 1인당 연평균 190kg의 포장재 폐기물이 발생하고, 지난 10년간 포장재 폐기물이 20% 이상 급증해 원자재 소비에도 영향을 끼침. 이에 2022년 11월 30일 EU 집행위원회는 순환경제실행계획의 일부로 1994년부터 시행해온 포장 및 포장재 폐기물지침(Packaging and Packaging Waste Directive, PPWD)을 규정(Packaging and Packaging Waste Regulation, PPWR)*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한 개정안을 제안하였으며, 이번 **10월 24일 환경위원회는 표결을 거쳐 해당 개정안을 일부 수정한 최종 입장문을 발표함**. EU 집행위원회는 본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2030년까지 포장재 폐기물 1,800만 톤, 온실가스 배출 2,300만 톤이 감축될 것으로 예상함

(*) 지침은 이행을 위해 회원국이 국내법으로 전환해야 하지만, 규정은 국내법 전환과정 없이 모든 회원국에 직접적으로 적용됨

2. **규제 대상** : 모든 종류의 포장 및 포장 폐기물에 적용(산업, 소매, 가정)

3. 주요 내용

1) 생산자 책임의 확대

- 제조업체, 포장 공급업체, 수입업체, 유통업체 등에 대한 책임 및 규제 확대
- 회원국의 시장에 포장재를 출시하기 전 적합성 평가 절차 수행 및 기술 문서 작성 필요

2) 주요 제안 사항

- 모든 포장재는 재활용이 가능해야 함. **재활용 가능한 포장재는 2030년 1월 1일부터 특정 재활용 기준에 따라 설계되어야 하며, 2035년 1월 1일부터 대규모로 재활용되어야 함**
- 과잉 포장을 제한하기 위해 포장의 무게와 부피는 최소한으로 줄이되 동시에 포장의 기능을 보장해야 함

구분	내용
포장 공간	과대 포장 방지를 위해 전체 부피의 40%이상 빈 공간이 있는 포장 방식이 금지됨
판매 금지	15 마이크론(microns, 0.0001cm) 미만의 가볍고 얇은 비닐봉지 판매 금지 (위생상의 이유로 필요하거나 음식물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기본 포장재로 제공되는 경우 제외)
특정 포장 형식에 대한 제한 사항	사용자가 두 개 이상의 부분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거나 이를 장려하기 위해 고안된 캔, 통, 냄비, 패킷 등으로 판매되는 상품의 포장 등 여러 유형의 일회용 포장을 금지함
플라스틱 포장에서 재활용 원료 사용	1) 새 플라스틱 포장재 제조 시 재활용 플라스틱 원재료 사용을 의무화 2) 포장재에 따른 재활용 최소 비율 규정(하단 표 참고)
재사용 및 재충진	재사용 가능한 포장을 사용하는 사업자는 특정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하나 이상의 재사용 시스템에 참여하여야 하며, 특정 품목의 포장에서 일정 비중을 재사용 및 리필이 가능한 포장으로 대체 필요
환경 라벨링	포장 재사용 관련 가능성에 대한 라벨 및 재사용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QR 코드 또는 기타 디지털 매체를 통해 1회용 포장인 아니라는 점과 수거 장소에 대한 정보 확인이 가능하도록 해야 함
식품 포장의 화학물질	식품 접촉 포장에 의도적으로 첨가된 과불화화합물(PFAS)과 비스페놀 A 사용이 금지됨

※ [참고] 제품 패키지별 플라스틱 함량 요건

패키지 종류	2030년 1월 1일부터	2040년 1월 1일부터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재질의 접촉민감성 포장 (1회용 플라스틱 음료병 제외)	30%	50%
PET 이외의 플라스틱 소재로 제작된 접촉민감성 포장 (1회용 플라스틱 음료병 제외)	7.5%	25%
1회용 플라스틱 음료병	30%	65%
그 외 플라스틱 패키지	35%	65%

3) 플라스틱 포장재 감축 목표 (2018년 대비 감소해야 하는 1인당 포장폐기물의 양)

2030년	2035년	2040년
-10%	-15%	-20%

4. 시행 일정: 2023년 11월 20일 유럽 의회 본 회의에서 투표 예정

출처

Packaging Law, EU Proposal for a Regulation on Packaging and Packaging Waste – the Highlights, 2023.0.02

EU, Revision of the Packaging and Packaging Waste Directive

Committee on the Environment, Public Health and Food Safety, Compromise amendments, 2023.10.18

kotra 해외시장뉴스, 유럽연합, 포장 및 포장재 폐기물 관리 규제 강화 추진, 2022.12.19